

10-가.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수시

【공시시기】 : 수시(감사 처분 결과 통보일 및 행정처분위원회 확정 처분 통보일, 재심의 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, 조치 결과 공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추가 공시)

【공시방법】 : 직접입력

【공시내용】 : 2025년 「고등교육법」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

기준연도	감사 구분	지적 건명	지적 내용	처분	처분일	진행 경과	조치 결과	조치 완료일

■ 작성지침

○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관실 감사, 행정처분위원회 결과로 처분 받은 「고등교육법」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 입력
 ※ 감사 주체가 감사원, 교육부 감사관실(감사총괄담당관, 반부패청렴담당관, 사학감사담당관)인 경우 모두 해당(단, 감사 처분은 감사원, 교육부 감사관실이 아닌 교육부 소관부서를 통해 통보될 수 있음)

※ 정상이행(이행 중), 미이행 건은 이행연도까지 계속 공시

※ 이전 연도에 처분 받았으나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처분 연도와 조치 완료 연도가 다른 경우, 처분 연도부터 조치 완료 연도까지 계속 공시

○ 감사원, 교육부 등에서 받은 제재내용을 상세하게 기재

○ 법인 소속의 기타 시설 및 개인에 관한 처분사항일지라도 공시(개인정보 제외)하고, 제재예고의 경우 예고사실을 기재하며 향후 제재예고가 취소될 경우, 해당 내용 삭제 후 수정 공시

【감사 구분】 : 처분 받은 명칭을 기재

【지적 건명】 : 「고등교육법」 제60조 ~ 제62조에 의해 처분 받거나 조치 완료된 위반사항

【지적 내용】 :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지적 내용을 기재(행정처분 및 감사원, 교육부 등 감사에 따른 시정명령 포함)

【처분】 : 상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원, 교육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, 제재예고 등을 받은 내용

【처분일】 : 처분 받은 일자(년, 월)를 기재

【진행 경과】 : 처분에 따른 후속 처리 진행 경과, 이행완료/이행종결/정상이행(이행 중)/미이행

- 이행완료: 감사처분 또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결과(확정처분)에 따른 개선, 시정, 통보사항 등이 처분요구대로 이행되거나 사정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처분요구에 상응하는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
- 이행종결: 감사처분 또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결과(확정처분)에 따른 개선, 시정, 통보사항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,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정상이행(이행 중): 감사 처분요구 또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결과(확정처분)대로 이행중인 경우
- 미이행: 감사 처분요구 또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결과(확정처분) 사항을 부당하게 이행하거나 미이행한 경우

【조치 결과】 : 처분에 따른 후속 처리 내용

- ※ 추가 소명 등으로 처분 내역 취소 시, 기 공시한 처분 내역 삭제
- ※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‘조치 결과’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 후, 결과에 따라 수정 공시

【조치 완료일】 : 조치완료 일자(년, 월)를 기재

참고

「고등교육법」

제60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)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, 설비, 수업, 학사(學事),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,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·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61조(휴업 및 휴교 명령) ① 교육부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,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.

제62조(학교 등의 폐쇄)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
1.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·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(過失)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2.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·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
3.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
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
10. 「고등교육법」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

■ **참고사항**

-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